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보행안전
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28 일

여 수 시 장 2022.12.28



여수시 조례 제1814호

붙임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부.

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「여수시
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도로·교통·장애인·노인·아동·자연(도시)공원·산책로(등산로) 등 보행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- 나.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

다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라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

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